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9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강화(안 제3조)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추가하여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안 제3조의2~제3조의3)

- 재심의 조항 신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0조)

- 관리계획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

라.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30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 변경
  (전년도 대비 10%이상 초과상승분 → 5%이상 초과상승분)

마.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신설(안 제87조의2)

-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바. 기타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제27조 개정사항 반영 (안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됨에 따라 명확한 대상범위 규정을 위해 관련 급여중 대상자를 제1호 및 제4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택 (안 제25조제3항, 제34조제1항3호)
- 지방재정법 제67조에 의거 경리관 → 재무관,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으로 변경(안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0조)
-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6조, 제34조, 제42조, 제81조제4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지방재정법』 제6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8. 27. ~ 9. 16.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10. 6)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

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4. 다음 각 목의 구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 이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대 부"를 "대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마포구"로 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30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10을”을 “5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매 각”을 “매각”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신 탁”을 “신탁”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목과”를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
2. 도괴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6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출 납”을 “출납”으로 한다.

제70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보 관”을 “보관”으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장 부”를 “장부”로 한다.

제13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제3조(변상금의 징수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마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관리책임)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본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

	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 설>	⑨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 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 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 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

	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

	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4. 다음 각 목의 구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신 설>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 이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영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

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 설>	④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7조제6항 -------- ---------- ---------- ---------- ----------.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제27조제6항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장 일반재산	제5장 일반재산
제1절 대 부	제1절 대부
제22조~제23조 (생략)	제22조~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5. 마포구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② (생 략)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③ ---------- ----------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제13조제9항----------외국인투자기업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 ----------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100분의 5 ----------100분의 5 ----------.
제2절 매 각	제2절 매각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조성원가 매각) -------- ---------- ---------- ---------- -조성원가는 인건비,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절 신 탁	제3절 신탁
제37조 (생략)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② ---------- ---------- ---------- 호와 ------.
가. 재해	1. 재해
나. 도괴위험	2. 도괴위험
다. 신설기관	3. 신설기관

라. 임차	4. 임차
마. 노후	5. 노후
바. 협소	6. 협소
사. 위치 부적당	7. 위치 부적당
제61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 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재무관 ----------.
제62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생 략)	제62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61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 ----------.
제63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생 략)	제63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② ----------분임재무관 ----------.
제10장 출 납	제10장 출납
제65조~제69조 (생략)	제65조~제69조 (현행과 같음)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 ---------- ---------- ----------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장 보 관 제12장 장 부 제13장 보 칙	제11장 보관 제12장 장부 제13장 보칙
<신 설>	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회의참석 수당
-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지급
- 산출근거 : 8명×70,000원×6회=3,336,000원

○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7항(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 2016년 예상액 : 3,336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재 무 과 변 치 봉
연 락 처	02-3153-8602